

제 2 부
상품 무역

제 3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1절 - 정의 및 적용 범위

제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 필름이라 함은 음향의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된 시각매체로서 본질적으로 당사국의 영역내에 설립된 인이나 거주자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또는 작동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구성되고,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으로는 부적합하며 각 포장단위당 필름 한편만을 포함하면서 더 큰 탁송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포장품 형태로 수입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농업협정 제2조에 언급된 상품을 말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적 견본품이라 함은, 선적시 개별적으로 또는 총계로 미화 1불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를 갖거나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가치를 갖는 상업적 견본품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게 된 표시·파열 또는 천공되었거나 또는 달리 처리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소비된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또는

나. 상품의 가치·형태 또는 용도, 또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실질적 변경을 야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관세라 함은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추가 부과금의 형태를 포함한,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1994년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승계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과 합치하게 부과된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고 제7장과 합치하게 적용되는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그리고
라. 수입수량제한, 관세쿼타 또는 특혜관세 수준의 운영과 관련된 입찰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상품에 대해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스포츠 목적상 수입된 상품이라 함은 그 상품이 수입된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스포츠 경기, 시
범 또는 훈련에서의 사용을 위한 스포츠용품을 말한다.

진열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라 함은 그 구성 부품, 보조 기구와 부속물을 포함한다.

인쇄된 광고물이라 함은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 발간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촉진·선전 또는 광고하는데 사용되고, 본질적
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를 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제49류
에 분류된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수선 또는 개조라 함은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상실하게 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상
이한 상품을 생산하는 작업 또는 과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1) 완제품을 획득하기 위한, 미완성 제품의 생산 또는 조립의 일부분인 작업 또는 과정은 그
미완성 제품의 수선 또는 개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상품의 부품은 수선 또는 개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2조 적용 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2절 - 내국민대우

제3.3조 내국민대우

1. 각 당사국은 GATT의 제3조 및 그 주해와 합치되게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를 부여하고, 이를 위하여 GATT 제3조와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승계하는 협
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모든 조항은 이 협정에 포함되어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자국산과 동종 또는 직접 경쟁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해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3절 - 관세

제3.4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도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또는 관세를 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부속서 3.4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일방 당사국이 언제라도 비당사국에 대해 이 협정에 포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품에 대한 최혜국 관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은 상호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의 조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4.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국은 관세철폐계획에 규정된 관세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5.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의 가속화에 관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는 제 18.1조 및 각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발효되며, 그 상품에 대하여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결정된 어떠한 다른 관세율이나 단계분류보다 우선한다.
6.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부속서 3.4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설정된 쿼터내 수입을 할당하는 수입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관세율할당의 부과에 의해 야기되는 효과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수입에 대한 무역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5조 상품의 일시적 반입 허가

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당사국 영역내에서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 또는 대체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부속서 3.5에 명시된 수수료의 면제를 포함한 무관세 일시 반입허가를 부여한다.
 - 가. 제13장에 따른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기업인이 영업활동, 무역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장비,

- 나. 언론장비 또는 음향 및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장비와 영상 장비,
- 다. 스포츠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과 진열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그리고
- 라. 상업적 견본품과 광고 필름.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도 제1항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 가. 일시적 입국을 원하는 타방 당사국의 공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 반입될 것,
- 나. 상기인의 영업 활동, 무역 또는 직업 수행에 있어서 상기인에 의해서만 사용되거나 상기인의 개인적인 감독 하에 있을 것,
- 다. 그 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동안에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 라. 일시 반입의 경우가 아니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시에 지불되어야 할 부과금의 1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유가증권 또는 상품의 수출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담보를 수반할 것, 다만,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가 요구되지 않는다.
- 마. 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 바. 상기인의 출국시 또는 일시 반입 허가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기간내에 반출될 것, 그리고
- 사.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3.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도 제1항 라호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 가. 타방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의 권유를 위해서만 반입 허가될 것,
- 나. 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동안 진열 또는 시연 이외에 판매, 임대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다. 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 라. 일시반입 허가의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기간 내에 반출될 것, 그리고
- 마. 사용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4. 상품이 제1항에 따라 무관세로 일시 반입이 허가되고, 당사국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당사국은 다음을 부과할 수 있다.

- 가. 상품의 반입 또는 최종 수입시에 지불되어야 하는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 그리고
- 나. 상황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적용 가능한 형사,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

5. 제10장과 제11장에 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 가.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국제통행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모든 경로를 통

해 자국 영역으로부터 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어느 당사국도 컨테이너의 반입 항구와 반출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이나 부과금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다. 어느 당사국도 컨테이너의 자국 영역으로의 반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당해 컨테이너를 특정한 항구를 통해 반출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라.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반입하는 운송수단이 그 컨테이너를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반출하는 운송수단과 동일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3.6조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적 견본품 및 인쇄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 만한 가치의 또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상업적 견본품, 그리고 인쇄 광고물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무관하게 무관세 반입을 허가해야 하나, 다음 사항은 요구할 수 있다.

가. 그러한 견본품은, 당해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또는 당해 서비스가 타방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타방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의 권유를 위해서만 반입될 것.

나. 그러한 광고물은 각 광고물의 복사본 하나를 초과하여 포함하지 않는 소포장으로 수입되어야 하며, 그러한 광고물 또는 소포장은 대포장 화물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제3.7조 수선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느 당사국도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해서는 아니되며, 수선 또는 개조의 목적으로 자국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인 반출상태에 있는 것이라면, 자국 영역내에서 수선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2. 어느 당사국도 수선 또는 개조의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8조 관세 평가

양 당사국이 상호무역에 적용하는 관세평가규칙은 관세평가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절 - 비관세 조치

제3.9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는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수입 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해서 GATT 제11조 및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승계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이 이 협정에 편입되어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편입된 GATT의 권리와 의무가, 어떠한 다른 형태의 제한도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수출가격요건 그리고 상계와 반덤핑 명령 및 약속의 시행을 위해 허용된 것을 제외한 수입가격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3.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에 대한 상품 수출에 대해 일정한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에, 이 협정은 그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비당사국의 당해 상품을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는

나. 일방 당사국의 상품을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는데 대한 조건으로, 당해 상품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않은 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당사국의 영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

4.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타방 당사국내의 가격 설정, 마케팅 및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하기 위해 서로 협의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부속서 3.9에 규정된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10조 세관사용자 수수료

세관사용자 수수료의 액수는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의 범위 내로 제한되며, 그 수수료가 국내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를 위해 부과되거나 재정목적상 수출입 상품에 대한 일종의 조세로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세관사용자 수수료는 제공된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에 상응하는

구체적 요율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제3.11조 수출세

어느 당사국도 당해 상품이 국내에서 소비될 때 그 상품에 대한 관세, 세금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당해 상품의 수출에 대한 관세, 세금 또는 다른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된다.

제3.12조 농산물에 대한 긴급조치 조항

1. 이 협정 제6장 및 농업협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이 원산지인 상품이, 타방 당사국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 시장에 심각한 피해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타방 당사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농산물시장의 특별한 민감성을 감안하여 타방 당사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이 장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상품에 대한 더 이상의 관세 인하의 중지, 또는

나. 당해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혜국 관세와 관세철폐계획에 따른 관세인하의 기준이 되는 기본관세 중 더 낮은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인상.

3.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을 모색할 목적으로 철저한 상황 조사를 위해 그 문제를 자유무역위원회에 회부한다. 타방 당사국의 요청시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위원회 내에서 협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요청이 있을 후 30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120일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 또는 혼란을 제한하거나 구제하는데 엄격히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수입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이를 즉시 통지한다.

5. 이 조에 따라 취하는 조치는 발생한 어려움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한다.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농산물 부문에 부여된 특혜의 전반적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제4항에 따라 취한 일시적 조치가 취해진 기간을 포함하여 긴급제한조치가 양국간 무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보상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

국은 상호 합의하는 해결에 이르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영향을 받은 수출국은 위원회에 통지한 후 이 장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양허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6. 이 조의 목적상,

가. "심각한 피해"는 일방 당사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로서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상당하고도 전반적인 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나. "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요원한 가능성이 아닌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명백하게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3.13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에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이 위원회는 이 장, 제4장, 제5장 및 통일규칙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보장한다.

3. 이 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갖는다.

가. 비관세 조치의 적용을 포함한 시장 접근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 및 자유무역위원회에 대한 권고, 그리고

나. 관세 철폐 과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속서 3.4에 규정된 기간을 포함하여, 시장 접근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협의와 연구를 통한 당사국간 상품 무역의 증진.

부속서 3.5

상품의 일시반입

제3.5조제1항에 명시된 한국으로부터의 상품의 일시반입은 1998년 7월 21일자 관보에 수록되어 있는, 법의 효력을 가지는 재무부령 제2호의 칠레 세관규칙 제106조에 규정된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3.9

수출 수입 조치

칠레측 조치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중고 차량의 수입에 관련된 조치를 지속 또는 채택할 수 있다.